

모빌리티인문 정책제안 24-2(통권 12호)

# 교정 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필요성과 확대 방안

---



# Contents 목차

|                                |    |
|--------------------------------|----|
| I. 제언 배경 .....                 | 1  |
| 1. 재범의 증가 .....                | 1  |
| 2. 응보적 정의의 한계와 감옥의 역할 .....    | 2  |
| II. 회복적 사법의 의의와 실제 .....       | 4  |
| 1. 회복적 사법의 의의 .....            | 4  |
| 2. 회복적 사법에 근거한 형사사법제도의 예 ..... | 5  |
| III.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      | 8  |
| 1. 필요성과 의의 .....               | 8  |
| 2. 회복적 사법의 실천 시도 .....         | 9  |
| 3. 고려해야 할 과제 .....             | 11 |
| IV. 제언 .....                   | 14 |
| 1. 피해자의 참여 가능성 제고 .....        | 14 |
| 2. 경험적·실증적 연구의 축적 .....        | 15 |
| 3. 회복적 사법 시행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 | 16 |
| 4. 공동체 참여의 다양화 .....           | 17 |
| ● 참고문헌 .....                   | 17 |



## 교정 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필요성과 확대 방안

응보적 정의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형사사법체계는 국가와 범죄자 사이를 중심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형사절차는 가해자가 과거 해악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가 있지만,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참회와 반성의 기회가 거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국가-범죄자 중심의 형사절차 체계에서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는 증인 또는 주변인의 지위에 머무르게 된다. 이에 반하여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역 사회 구성원 등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와 손실을 복구하고 공동체 내에서 깨진 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우리 형사사법에서도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수용하여 몇 가지 제도를 신설했으나, 가해자의 진정한 참회와 재사회화를 위해서 특히 교정 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부터 개별 교도소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고, 프로그램 시행 이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형사사법 체계와 회복적 사법 사이에 법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전통적 형사사법과의 조화가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영교도소를 중심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모든 교정 기관에서의 보편적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본 제안서는 교정 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현행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하여 시설 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프로그램 참여의 창구를 개설한다. 둘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기관별로 행해지고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하여 법무부 산하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수형자의 완전하고 안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수형자가 멘토링이나 봉사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출소 이후 취업 연계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Keywords

회복적 사법, 응보적 사법, 교정, 재사회화, 교도소

〈Abstract〉

# Necessity and Expansion Strategies of Restorative Justice in the Corrections

Based on retributive justice,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focuses on imposing a punishment corresponding to the crime committed, centr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offender. While this criminal procedure implies that the offender takes responsibility and pays the price for the past wrongdoing, it often proceeds in a manner that provides little opportunity for genuine repentance and reflection necessary for the offender's reintegration as a productive member of society. Additionally, in the state-offender-centered criminal justice system, the victim, who is a party to the crime, remains in the position of a witness or a bystander. In contrast, restorative justice emphasises active participation by the offender, the victim, and community members in resolving the incident, focusing on repairing the harm and restoring broken relationships within the community. Althoug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our country has adopted some aspects of the restorative justice paradigm and established new systems, there is a particular need for the active implementation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during the correctional stage to ensure the offender's genuine repentance and reintegration into society. Since the 2000s,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have been implemented in individual correctional facilities in Korea, an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have been observed in surveys conducted with participant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rograms. However, considering that legal conflicts may arise between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and restorative justice, there is a need to seek harmony between the two. Additionally, given that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are currently being operated mainly in private prisons in Korea, the universal implementation of these programs across all correctional facilities should be considered.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to promote restorative justice during the correctional stage. First, the existing victim notifica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inform victims of the contents of the in-facility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and to open a channel for their participation. Second, empirical and experiential research on the content and effectiveness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should be conducted. Third, a network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be established to share insights into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being implemented by various institutions. Lastly, to ensure the complete and safe reintegration of inmates into society, it is necessary to develop participatory programs that empower inmates as active participants rather than as subjects of mentoring or service and to consider establishing employment connections after release.

## Keywords

restorative justice, retributive justice, correction, resocialisation, prison

소망교도소에서 진행 중인 회복적 정의 실천 사례를 공유해 주신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I. 제언 배경

## 1. 재범의 증가

범죄는 개인의 기본적 기질이나 성향뿐 아니라 사회환경과 구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또한 개인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범죄라 하더라도 범죄 결과의 여파는 사회 전반에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국가는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범죄자를 처단하는 독점적 권한을 보유하면서 범죄자를 비범죄자와 격리하고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형벌을 집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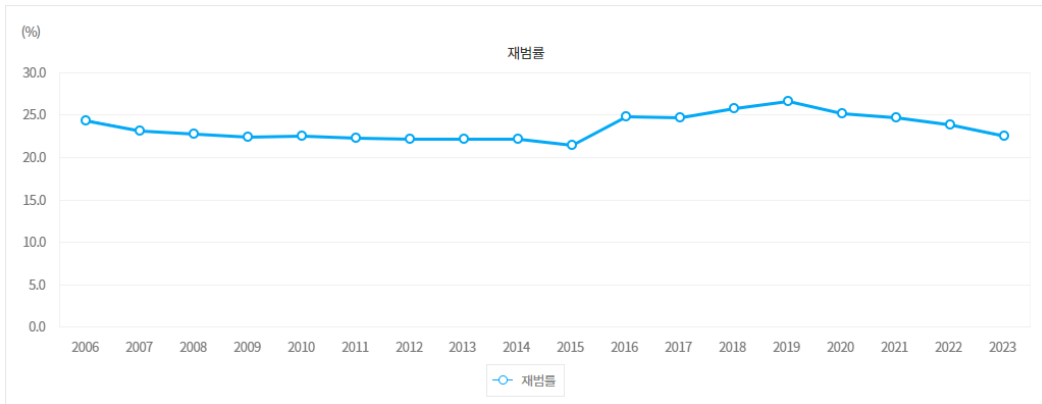
형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① 형벌은 그 자체가 범죄에 대한 응보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별도의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견해, ② 형벌을 통해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의 범죄 예방 효과(일반예방) 또는 ③ 범죄자 자신의 재범 방지 효과(특별예방)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해 왔음. 오늘날 형벌은 책임과 예방의 두 관점을 결합하여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지만, 실제 행형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시설 내 구금을 통한 형벌은 특히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데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출소 후 3년 이내 재복역률<sup>1</sup>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5년부터의 재복역률과 2006년 이후 재복역률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재범률<br>(%) | 21.4 | 24.8 | 24.7 | 25.7 | 26.6 | 25.2 | 24.6 | 23.8 | 22.5 |

〈표 - 1〉 3년 이내 재복역률  
(출처: 지표누리)

1 3년 이내 재복역률 = (4년 전 출소자 중 3년 이내 재복역자수 ÷ 4년 전 출소자수) × 100.



〈그림 - 1〉 2006년 이후 재범역률 추이  
(출처: 지표누리)

위 표와 그림은 특히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재범역과 벌금형 이하의 범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서 이를 포함한다면 전체 재범률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교정과 교화를 통한 범죄자의 재사회화 도모가 행형의 주목적으로 거론되지만, 위 표와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행 행형제도는 범죄자의 재범 억제 및 재사회화에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에게 어떤 수범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더욱 커다란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의 강력한 억제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현행 제도로는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통한 전자감시, 조건부 가석방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장치 해제 또는 시효 종료 이후의 재범 억제를 담보할 수 없음. 일시적인 재범의 억제가 아니라 반사회적 일탈행위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참회가 필요함.

## 2. 응보적 정의의 한계와 감옥의 역할

형사사법은 국가가 사회와 피해자를 대신하여 범죄자에게 범죄의 대가로서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함. 이러한 형사사법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을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 또는 응보적 사법이라고 함. 응보적 정의에 기반한 형사절

차는 국가와 범죄자 사이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형사법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와 범죄자 개인 사이의 힘의 균등을 위해 국가권력의 범위, 그로부터 침해될 수 있는 범죄자 기본권의 한계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음.

국가가 부과하는 형벌은 대상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모빌리티를 극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배제를 야기함. 특히 오늘날에는 형벌 외에 전자감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적 형사제재가 널리 활용되면서 비단 시설 내 구금의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로부터의 고립, 단절, 배제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음.

이러한 성격의 형벌은 과거 해악에 대한 책임과 대가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향후 재범을 범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참회와 반성의 기회가 거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책임 위주의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가 개입할 여지가 적고, 자신이 겪은 사건 해결에 주도적 위치를 갖지 못하고 주변인의 지위에 머물게 됨. 가해자를 검거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데 형사사법의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정작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 양형 산정의 기준으로서 가해자의 반성을 측정하기 위한 합의 대상 정도의 가치를 지니게 됨.<sup>2</sup>

이에 범죄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피해자와 공동체에 끼친 직간접적인 피해 회복과 가해자의 자발적 동기에 따른 재범 억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형사사법을 지배하는 응보적 정의의 패러다임을 재고하고 이를 보완·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송이, 〈회복적 사법을 위한 형사조정제도 개선 방향 연구〉, 《형사법의 신통향》 83, 2024, 51쪽.

## II. 회복적 사법의 의의와 실제

### 1. 회복적 사법의 의의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역 사회 구성원 등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와 손실을 복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일체의 범죄대응 형식을 의미함. 회복적 사법은 ‘회복적 정의’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은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잘못된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에 연루된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가 참여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당사자와 공동체 내에서 깨진 관계를 바로잡는 것에 초점을 둠. 비단 형사사법뿐 아니라 교육, 사회복지, 환경 등의 영역에서 두루 적용되고 있음.

회복적 사법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전통적인 갈등해결 방법으로서 그 주요 가치와 원칙은 지역, 문화, 종교, 역사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 문화형태라고 할 수 있음.<sup>3</sup> 회복적 사법이 다양한 지역의 전통에서 기원하였고 형사사법 실무에 맞추어 진화하기 때문에 통일적 개념이 부재한 상태이지만, 유연하고 탄력적인 개념은 역으로 회복적 사법의 확산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음.

회복적 사법은 범죄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모두 관여하는 방식으로 국가 - 범죄자 중심의 응보적 사법보다 종합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음.<sup>4</sup> 또한 피해를 회복하는 자발적 책임을 통해 깨진 관계를 복원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데 중점을 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음.<sup>5</sup>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기본적 관점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3 김문귀·김용석, <중한 범죄에 대한 회복적 사법 적용 방안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11(3), 2023, 265쪽.

4 전용재·김수민, <회복적 사법의 효과성 실증>, 《한국치안행정논집》 20(3), 2024, 231쪽.

5 배임호·박일연,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근거한 교정복지 실천으로서 갈등중재 사례연구: Sycamore Tree Project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28(1), 2018, 5쪽.

| 응보적 정의        | 회복적 정의              |
|---------------|---------------------|
| 누가 잘못된 사람인가?  |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
|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
|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

〈표-2〉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관점과 문제 해결 방식

(출처: 김영식(2024)<sup>6</sup>)

응보적 정의에서 범죄란 국가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침해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 역시 국가가 됨. 이러한 구조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국가에 대하여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제 범죄 피해자는 갈등 관계에서 소외됨. 가해자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형벌의 집행으로 완수함으로써 재범 억제의 동력은 저하되며, 피해자의 근본적 피해회복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 2. 회복적 사법에 근거한 형사사법제도의 예

회복적 사법의 태동은 1970년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소재한 소도시 엘마이라(Elmira)에서 벌어진 소년들의 일탈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 당시 보호관찰관이었던 마크 얀치(Mark Yantzi)는 판사의 동의를 얻어 가해 소년들을 데리고 피해자의 가정을 방문하며 사죄 하였고 이 사건 이후 회복적 정의는 북미를 시작으로 전세계로 전파되었음.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의 이론이 국내 학계에 적극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이후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에는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다음과 같은 제도가 운영 중에 있음.

### 1)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

「소년법」은 소년사법에서의 국친주의와 보호주의 이념에 근거하여 처벌보다는 교육과 복지를 통한 성장을 목적으로 함(제1조). 이러한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미 2008년부

6 김영식,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제7회 모빌리티인문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2024.

터 화해권고제도<sup>7</sup>를 시행하고 있음. 「소년법」 제25조의3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음.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는 단순히 금전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해 소년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가해 소년의 품행 교정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의미가 있음. 이 제도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참가를 보장하고, 화해권고절차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가를 허용하고 있으며(「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 가해자의 교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서는 예외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다수 견해는 회복적 사법의 성격이 반영된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있음.<sup>8</sup>

## 2)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는 2006년 시범실시를 거쳐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이하에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재산범죄의 고소 사건,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 사건 등 주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형사조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은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형사조정위원회를 두어 형사조정을 담당하도록 함. 형사조정제도가 응보적 정의에 근거한 현행 형사법체계에서 나타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이와 같은 중립적인 제3자의 주재로 사건의 당사자가 피해의 회복과 관계의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주도하여 그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임.<sup>9</sup>

형사조정제도 도입 이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조정 의뢰 비율이 꾸준히 5%대를 유지하

7 화해권고제도는 본래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서로 절충하여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추어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축할 수 있다.

8 박상식, 〈소년사범의 재범 감소를 위한 회복적 사법의 도입 -화해권고제도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35, 2014, 172쪽; 신동주,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법조》 68(5), 2019, 505쪽; 오영근,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19(2), 2008, 10쪽; 정희철,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운영방안과 문제점〉, 《소년보호연구》 17, 2011, 96쪽.

9 장송이, 앞의 글, 52쪽.

고 있으며, 의뢰된 사건의 5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sup>10</sup> 형사조정제도는 검사의 공소 제기 이전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정을 통해 가능한 한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갈등 심화를 예방하며, 가해자 처벌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효율적 재사회화에 기여할 수 있음.

### 3) 회복적 경찰활동

경찰 단계에서 회복적 정의의 제도화는 2019년 수도권 15개 경찰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0년 전국 경찰서로 확대되었고, 2023년부터는 「경찰수사규칙」 제82조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9조에 근거하여 전국 경찰서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전면 실시하고 있음.

회복적 경찰활동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경찰관이 참여한 상태에서 민간 대화전문가가 대화모임을 주관하며, 대화모임에는 공동체의 다른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음.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합의와 조정을 이끌어내며 이 결과가 이후 형사절차에 반영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즉심청구나 훈방과 같은 가벼운 형사절차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sup>11</sup>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시범실시 기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의 80% 이상이 결과에 만족하였고,<sup>12</sup> 2020년 전면 실시 이후 2022년에는 조정 성공률이 89%에 이르고, 이 중 70%의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종결처리된 것으로 나타남.<sup>13</sup> 회복적 경찰활동 역시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당사자뿐 아니라 경찰과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함으로써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음.

10 전현욱 외, 〈형사조정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27쪽.

11 경찰청, 〈회복적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 경찰청 홈페이지,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support/support0102.jsp> (2024.7. 15. 최종방문).

12 김태한·최응렬, 〈회복적 사법의 이해와 경찰단계에서의 법제화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87, 2022, 63쪽.

13 김태한·최응렬, 〈회복적 경찰활동의 운용실태 및 정책방향〉, 《한국경찰연구》 23(1), 2024, 58쪽.

### III.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 1. 필요성과 의의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는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수사과 재판을 통해 범행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단계까지 이어짐. 회복적 사법은 가능한 한 형사사법 절차 초기에 제도적으로 구현되어야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음. 앞에서 살펴본 회복적 경찰활동과 형사조정제도 역시 공소 제기 이전 수사 단계에서 피해의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효율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반면, 형집행 단계는 형사절차의 마지막 시기로서 이미 과거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참여를 유발할 동기와 요인이 적음. 그러나 역으로 법적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으며, 구체적 프로그램을 충분히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함.

형사절차 초기에는 조속한 피해의 회복이 가능한 범죄, 예를 들면 명예를 훼손하거나 가벼운 폭력, 재산 범죄 등에서 회복적 사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선고 이후 형집행 단계에서는 살인, 성폭력 등과 같은 중한 범죄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반성과 재사회화 도모를 위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과 특히 이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의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또한 우리 행형은 시설 내 구금의 폐해를 극복하고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도모하고자 교정복지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음.<sup>14</sup> 교정 중심의 행형을 통해 범죄인을 교화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sup>15</sup> 형집행 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에 여전히 높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실제로 형의 집행 단계에서 시행되는 회복적 사법은 1980년대 북미를 시작으로 유럽과 미

14 박상식, 앞의 글, 164쪽.

15 옥필훈,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사법의 실무상 운용실태와 교정복지의 정책적 과제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37, 2015, 72쪽.

주 지역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데, 크게 가해자와 (동종 범죄의 다른) 피해자가 만나는 방식과 가해자의 재사회화를 돕기 위한 멘토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sup>16</sup>

## 2. 회복적 사법의 실천 시도

회복적 사법의 이론이 국내에 적극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 즈음으로 당시에는 국내에 필요한 구체적 정책 제시보다는 외국의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음.<sup>17</sup> 이후 2003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김천에서 최초로 설립되었고, 2005년에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률로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음. 또한 소년법상 화해 권고제도와 형사조정제도 및 회복적 경찰활동과 같이 회복적 사법이 구체적 제도로써 구현되기 시작하였음.

### 1) Sycamor Tree Project

국내 교정 단계에서 최초로 시도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2001년 안양교도소에서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시도한 Sycamor Tree Project라고 할 수 있음. 이 프로젝트는 1996년 국제교도협회(Prison Fellowship International)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재소자들의 재사회화를 목표로 재소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된 행동과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음.<sup>18</sup>

안양교도소에서는 7명의 재소자와 5명의 간접피해자<sup>19</sup>가 참여하여 총 7주에 걸쳐 자기 소개하기 - 범죄란 무엇인가 - 책임감 - 고백과 반성·용서하기 - 손해배상과 화해 - 손해배상 실행하기 - 축제 등의 주제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음. 이후 참가자들에게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되었으나 일회성에 그치고 지속되지 못하였음.<sup>20</sup>

16 김문귀·김용석, 앞의 글, 270쪽 이하.

17 이호중, 〈한국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형사법연구》 19(3), 2007, 297쪽.

18 배임호·박일연, 앞의 글, 9쪽.

19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다른 범죄의 피해자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었다.

20 배임호·박일연, 앞의 글, 18쪽.

Sycamor Tree Project는 2001년 안양교도소에서 시행된 후 11년이 지난 2012년에 ‘회복을 위한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성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행되었음. 이 프로그램은 2001년 안양교도소에서 시행된 프로젝트와 유사한 일정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참여 수형자들의 만족도 조사와 소감문에서 높은 수준의 긍정적 변화를 보였음.<sup>21</sup>

## 2) 부산교도소 회복적 교도소 만들기 프로젝트

2020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시행했던 프로젝트로서 입실 거부 수용자를 대상으로 부산교도소 심리치료팀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추후 효과를 측정하였음. 교도소에 수용된 자 중에서도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수용자 18명을 대상으로 한 해당 프로그램에는 비폭력대화, 감정자유기법, 감사운동 등이 포함되었고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총 2차에 걸쳐 진행되었음.<sup>22</sup>

종료 후 시행된 심리검사에서 대상자의 대부분이 자기존중감, 분노통제, 충동성, 공격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음. 또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교정 시설 내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개발과 발전을 위해 기관, 단체,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sup>23</sup>

## 3) 희망나눔센터 신설 추진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근거하여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정책과제 중 하나로 회복적 교정을 제시한 바 있음.<sup>24</sup>

이를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 동의를 전제로 교정공무원의 조정적 개입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동 체

21 김영식,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 적용 사례 연구 -입실거부 수용자 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적용 중심>, 《교정담론》 15(1), 2021, 97쪽.

22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과 일정, 효과에 관해서는 김영식, 위의 글, 106쪽 이하 참조.

23 김영식, 위의 글, 115쪽 이하.

24 법무부 교정본부 보도자료,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020년 12월 24일.

계를 구축할 것을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두었음. 구체적으로는 모범수형자로 구성된 ‘희망나눔 센터’를 신설하여 주변환경정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공익사업에 수형자 노동력을 제공하는 한편, 수형자에 대한 지역 사회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3. 고려해야 할 과제

#### 1) 전통적 형사사법과의 관계

공공선의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에 대한 해악을 설정하고 발생한 해악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응보적 사법에 기반한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국가가 가해자의 과거 행동에 대응하여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범죄자는 다양한 법률부조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에 방어하는 대립적 구조를 기본으로 함.<sup>25</sup> 따라서 형사절차에서는 미리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죄의 성립과 형벌의 정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유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무죄추정원칙, 법률과 그 집행은 명확하고 일관적이어야 한다는 법적 안정성 등이 중요한 원칙으로 부각됨.

형사절차 진행 단계에서 피해의 회복을 도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도출하여 이를 공소제기 여부, 양형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회복적 사법은 위에서 언급한 전통적 형사법의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전통적 형사사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① 회복적 정의가 응보적 정의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sup>26</sup> ② 응보적 정의가 회복적 정의의 보충적 모델로 기능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sup>27</sup> 이에 반하여 ③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는 지향점이 완전히 달라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결합할 수 없다는 견해도 존재함.<sup>28</sup>

회복적 사법은 피해와 깨어진 관계의 회복, 평화로운 갈등 해결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25 박정성·김효진, 〈민영교도소에 있어서 교정과 회복적 사법〉, 《한국치안행정논집》 9(3), 2012, 90쪽.

26 이호중, 앞의 글, 313쪽.

27 김용세, 〈형사제재시스템과 회복적 사법 -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형사제재체제의 개편(이호중)’에 관한 의견을 겸하여-〉, 《형사법연구》 23, 2005, 253쪽 이하.

28 이용식, 〈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 - 두 정의의 ‘절충’은 가능한 것인가?〉, 《동아법학》 54, 2012, 417쪽 이하.

그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회복적 사법에 관여하는 당사자의 권한과 책임, 절차의 주체와 그 한계가 뚜렷하지 않고, 특정 형사절차 단계에서 필연적인 정의가 아니라 수사 - 재판 - 형집행 - 보안처분 등 이념과 목적을 달리하는 각각의 단계에서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 제도와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함.

형사조정제도와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는 각각 「형사소송법」과 「소년법」, 즉 법률에 근거를 두고, 회복적 경찰활동은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내부 규칙에 근거하고 있음. 형집행 단계에서 행해지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개별 형사조정제도나 화해권고제도처럼 특정한 제도의 형태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근거나 구체적 시행 매뉴얼이 문제될 수 있음. 또한 특정 제도로써 행해지는 프로그램은 권리와 의무, 권한의 범위 등을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갈등 발생의 소지와 문제 해결을 위한 준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2) 회복적 교정의 보편적 시행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정 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곳은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임. 소망교도소는 2000년 제정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같은 해 12월 1일 개소한 비영리 교도소로서 한국교회 연합회와 설립한 아가페 재단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소망교도소는 수용인원 400명의 규모로 기독교 이념에 기반하여 회복적 정의를 지향, 모든 수형자들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입소와 출소기간에 맞추어 맞춤형 교육모델을 운영하고 있음.<sup>29</sup>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한 소망교도소의 재복역률은 10% 내외로, 같은 기간 모든 교도소 대상 재복역률인 25% 내외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관하여 소망교도소 입소 자격이 애초에 형기 7년 이하, 누적 범죄 수 2범 이하로 국한되고, 마약·조직폭력사범을 제외하는 등 범죄경력이 낮은 수형자들 위주로 구성되며, 재복역률이 높은 마약사범이 제외되어 있

29 소망교도소, 《소망교도소 10주년 기념백서》, 고려문화사, 2021, 83쪽 이하.

다는 점 등을 들어 단순 비교 수치 타당성에 관한 비판적 견해가 있기도 함.<sup>30</sup>

민영교도소의 운영철학은 “거듭남과 회복 공동체”로 수형자들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전적·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장소로 기능할 수 있음.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경력이 낮은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전체 수형자 중 지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된다는 점, 국가적 차원의 조직적 적용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민영교도소 중심의 회복적 사법 실천을 넘어 보편적 시행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임.

30 권수진 외,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XV) -민영교도소 운영 10년의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2021, 302쪽.

## Ⅳ. 제언

### 1. 피해자의 참여 가능성 제고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면 만남을 통해 가해자는 진정한 참회와 반성을, 피해자는 피해 감정을 이해받고 치유하는 과정을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다양한 경험과 증상을 나타내며 범죄의 종류나 피해의 양상에 따라 형사절차에서의 니즈도 다를 수 있음.<sup>31</sup> 피해자는 국가가 자신을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응당한 대가를 부과하여 줄 것을 원하는 경우가 있음. 특히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와의 대면에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교정 단계에서는 물론 형사절차 초기부터 피해자의 직접적인 관여와 화해를 기대하기 어려움. 또한 살인과 강도와 같은 중범죄의 피해자 역시 피해자와의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살인범죄를 대상으로 한 시설 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서는 수형자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간접 피해자의 참여가 이루어졌음.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두려워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형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가석방 등 신병의 변경 여하와 그 사유 등을 알 권리가 있음. 「형사소송법」과 하위 법령은 피해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결과, 구속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나 가석방과 같은 신병에 관한 상황,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 피해자 통지제도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야 한다는 점, 통지의 형식화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피해자 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근거 조항 개정, 실질적 통지 체계 구축 등을 권고한 바 있음.<sup>32</sup>

이와 같은 개선 방안에 덧붙여 피해자가 본인의 사건 및 교정의 실체에 대하여 알 권리를 실

31 大山みち子, 〈被害者支援と被害者心理〉, 大谷實/山上皓編, 《被害者学被害者学》, 東京法令出版, 2002, 24頁 以下.

32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10차 권고안〉, 2022, 12~13쪽.

질적으로 충족시키고 회복적 사법의 참가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교정 시설 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참가 여부, 프로그램의 내용을 통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나아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대한 피해자의 참여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 피해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비교법적 입법례로서 캐나다의 「피해자 권리법」(Canadian Victims Bill of Rights) 및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을 들 수 있음. 해당 법률에 따라 모든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와 신병 상황뿐 아니라 수용자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sup>33</sup> 나아가 이 정보를 토대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피해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시사의 의의가 있음.<sup>34</sup>

## 2. 경험적·실증적 연구의 축적

회복적 사법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는 회복적 사법 이념과 배상의 효과를 개념적으로 서술한 연구가 주를 이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 대상자의 개별적 성향, 연령, 범죄의 종류, 프로그램의 구체적 시행 내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그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참여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에 대한 가해자·피해자의 만족도, 재사회화와 재범 억제 효과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현재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문헌들이 축적되고 있지만, 교정단계에 있어서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일회적, 단편적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 외에 실질적으로 재범 억제 효과를 측정할 만한 지속적 추적 관찰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교정 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이 형사절차의 조기 종료 혹은 피해의 조속한 회복보다는 가해자의 재사회화와 재범 억제 효과와 관련하여 특히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보다 장기적이고

33 허경미, <캐나다의 회복적 사법 교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62, 2016, 142쪽.

34 허경미, 위의 글, 151쪽.

체계적인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3. 회복적 사법 시행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현재 민영교도소를 주축으로 다양한 활동이 시도되고 있는데, 국영교도소와는 달리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운영과 자율적인 조직적 특성, 범죄의 종류와 형기가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된 수형자 수용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음.

한편, 법무부는 2022년 11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전문가 양성을 위한 ‘마음이음 회복적사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마음이음 회복적사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회복적 사법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임.

기관별 또는 형사절차의 단계별로 산재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정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국내에서 회복적 사법을 다루는 기관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해서는 유럽연합의 예를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음.

유럽연합은 2018년 EU 회원국 및 그 밖의 지역에서 회복적 사법을 다루는 기관 또는 부처를 중심으로 유럽 회복적 사법 정책 네트워크(European Restorative Justice Policy Network, ERJPN)를 조직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결연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음. 매년 개최되는 유럽 회복적 사법 포럼(European Forum for Restorative Justice)을 통해 회복적 사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상 그룹에게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있음.<sup>35</sup>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에 거점을 두고 기관 간 정례 포럼 개최를 통하여 개별 기관의 인사이트 공유, 공동 프로그램 개발, 동일 프로그램의 기관별 시행과 효과 검토 등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35 European Forum for Restorative Justice, “European Restorative Justice Policy Network,” 유럽 회복적 사법 포럼 홈페이지, <https://www.euforumrj.org/en/european-restorative-justice-policy-network> (2024. 7. 15. 최종방문).

#### 4. 공동체 참여의 다양화

회복적 정의는 개별 가해자, 피해자뿐 아니라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핵심 요소로 하고 있음. 공동체는 저마다 특정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피해의 회복, 반성, 책임 등에 있어서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회복적 정의와 사법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전제로 하여야 함.<sup>36</sup>

공동체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지원하고 양자 간의 충돌의 소지를 줄이는 조정 역할을 하며 재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함. 검찰 또는 법원의 형사조정위원회나 화해권고위원은 국가 주도의 기구로서 주로 변호사, 의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교정 단계에서는 가족, 이웃 등의 참여가 사회로의 완전하고 안정적인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공동체 참여는 수형자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참여, 예를 들어 수형자를 상대로 한 멘토링, 상담이나 교육 봉사 형태뿐 아니라 수형자가 다른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봉사의 주체가 되는 참여를 고려해 볼 수 있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 시설이나 병원, 동물보호소 등의 시설에서의 봉사, 나아가 출소 후 취업과 연계 구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참고문헌

#### 1. 단행본 및 논문

- 김문귀·김용석, 〈중한 범죄에 대한 회복적 사법 적용 방안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11(3), 2023, 261~285쪽.
- 김영식,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 적용 사례 연구 -입실거부 수용자 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적용 중심-〉, 《교정담론》 15(1), 2021, 93~119쪽
- 김용세, 〈형사제재시스템과 회복적 사법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형사제재체제의 개편(이호중)’에 관한 의견을 곁하여-〉, 《형사법연구》 23, 2005, 224~253쪽,
- 김재희, 〈회복적 사법에서 공동체의 의미에 관한 소고〉, 《형사법연구》 33(2), 2021, 235~261쪽.

36 김재희, 〈회복적 사법에서 공동체의 의미에 관한 소고〉, 《형사법연구》 33(2), 2021, 238~239쪽.

- 김태현·최응렬, 〈회복적 경찰활동의 운용실태 및 정책방향〉, 《한국경찰연구》 23(1), 2024, 63~82쪽.
- \_\_\_\_\_, 〈회복적 사법의 이해와 경찰단계에서의 법제화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87, 2022, 51~82쪽.
- 박상식, 〈소년사범의 재범 감소를 위한 회복적 사법의 도입 -화해권고제도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35, 2014, 153~182쪽.
- 박정성·김효진, 〈민영교도소에 있어서 교정과 회복적 사법〉, 《한국치안행정논집》 9(3), 2012, 87~110쪽.
- 배임호·박일연,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근거한 교정복지 실천으로서 갈등중재 사례연구: Sycamore Tree Project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28(1), 2018, 3~25쪽.
- 소망교도소, 《소망교도소 10주년 기념백서》, 고려문화사, 2021.
- 신동주,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법조》 68(5), 2019, 496~528쪽.
- 오영근,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19(2), 2008, 5~24쪽.
- 옥필훈,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사법의 실무상 운용실태와 교정복지의 정책적 과제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37, 2015, 69~88쪽.
- 이용식, 〈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 -두 정의의 '절충'은 가능한 것인가?〉, 《동아법학》 54, 2012, 417~448쪽.
- 이호중, 〈한국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형사법연구》 19(3,상), 2007, 297~338쪽.
- 장송이, 〈회복적 사법을 위한 형사조정제도 개선 방향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83, 2024, 45~86쪽.
- 전용재·김수민, 〈회복적 사법의 효과성 실증〉, 《한국치안행정논집》 20(3), 2024, 227~244쪽.
- 정희철,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운영방안과 문제점〉, 《소년보호연구》 17, 2011, 91~113쪽.
- 허경미, 〈캐나다의 회복적 사법 교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62, 2016, 130~161쪽.
- 大山みち子, 〈被害者支援と被害者心理〉, 《被害者学被害者学》, 大谷實/山上皓編, 東京法令出版, 2002.

## 2. 기타 자료

- 경찰청, 〈회복적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 경찰청 홈페이지,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support/support0102.jsp> (2024. 7. 15. 최종방문).
- 권수진 외,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XV) - 민영교도소 운영 10년의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김영식,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제7회 모빌리티인문 정책세미나 발표문, 2024.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10차 권고안〉, 2022.

법무부 교정본부 보도자료,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020년 12월 24일.

전현욱 외, 〈형사조정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European Forum for Restorative Justice, “European Restorative Justice Policy Network,” 유럽 회복적 사법 포럼 홈페이지, <https://www.euforumrj.org/en/european-restorative-justice-policy-network> (2024. 7. 15. 최종방문).